

발행일_ 2015. 11. 30 발행인_ 노 혁

발행처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제작_ 계문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김승경 | 연구위원 skkim0822@nypi.re.kr

요약¹⁾

-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가정폭력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음. 또한 개별 피해자 특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인해 피해 가족 구성원들은 구성원 특성별로 별개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임.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보호 방안의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년도 고유과제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의 주요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분석,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별을 통한 조기개입
 -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 명시
 -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도입방안 마련
 -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 심리적 외상센터 운영
 -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 교육 실시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입을 위해 공적기관(경찰)과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마련 필요
-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가정복귀(또는 부모 격리 시) 등에 관한 의사 결정 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 특성에 부합하는 대처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 요구
- ▶ 신고주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구축 필요
- ▶ 단순한 가해자 성행교정 교육 및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이외에 가·피해 당사자 간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방법 도입 필요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변 성인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주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나 전문기관 담당자들은 상담이나 출동의 조치를 취해주긴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모 간 폭력 목격을 경험한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변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긴 하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정폭력을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거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 별다른 행동을 취해주지 않음.
-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 피해 자녀들이 이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복폭력 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청소년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폭력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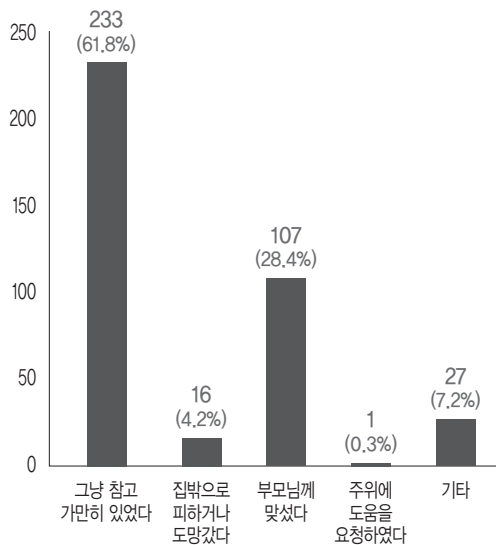


그림 1 —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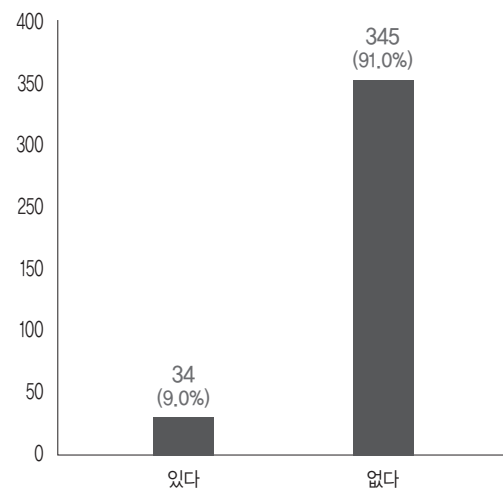


그림 2 —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피해자(여성) 실태조사 결과

-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질서 유지나 일처리를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경향을 보임.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음.
-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지원, 용돈 및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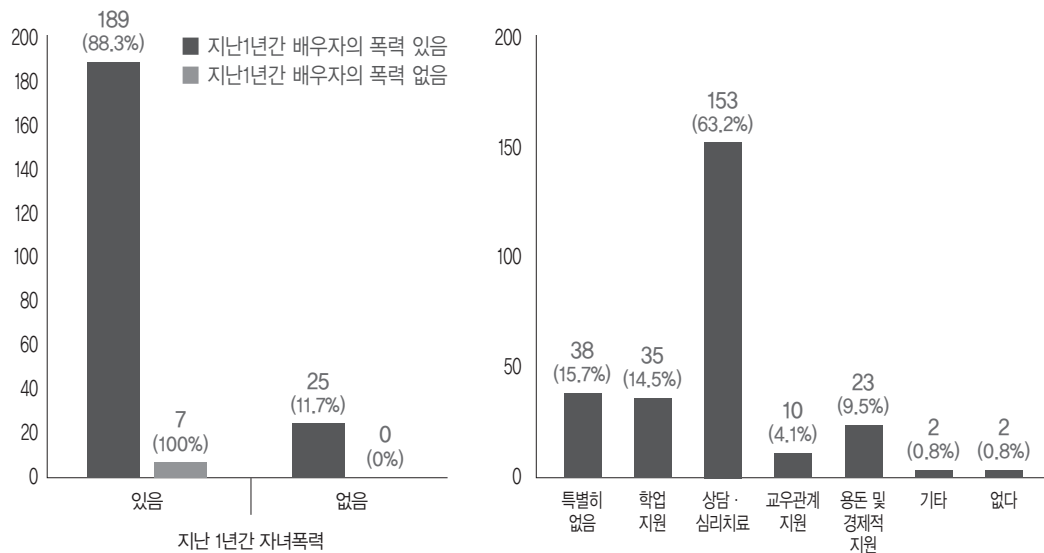


그림 3 —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

그림 4 —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후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는 미움과 불쌍함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는 보호해주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을 경험한다고 보고함. 가해자와 피해자인 부모 사이에서의 심리적 상처와 분노와 죄책감과 같은 양가감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치료 지원이 요구됨.
- ▶ 가정폭력 발생 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자책과 연민의 마음을 가짐.
- ▶ 폭력 경험 후 시설입소과정에서는 대체로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폭력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 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고 어머니를 위해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함.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교육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 쉼터 및 일시보호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회복 및 자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됨.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기관 지원이 필요함.

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제언

▶▶ 법률 관련 개선방안

- ▶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별을 통한 조기개입
 -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가능하도록 범주화해야 함.
 -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감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함.
- ▶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 명시
 -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행위 시 국가가 복지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보호법에 '건전한 가정육성'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길을 마련해야 함.
- ▶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의 도입방안 마련
 - 원가정 구성원과의 재결합이 가능한 관계개선, 재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정책 관련 개선방안

▶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긴 하나,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 기존 가정폭력 상담기관은 대체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심리적 외상센터 운영

-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의 범죄행위,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다만,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기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하여 지원횟수나 지원비용의 한계로 인해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거취문제 등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함. 이에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아동·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폭력 목격 경험)은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여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따라,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함.

▶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 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추후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문제의 가해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의 대물림 가능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각종

폭력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반폭력 교육은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님을 가르치고, 대인간 갈등해결의 방법과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에 기반하여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업무담당자들의 편견과 선입견 등으로 인해 2차적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은 사적인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쉼터 공간이 성별이나 연령 제한 문제로 인해 입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최소 시도별 1개소 이상, 쉼터 내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 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여성(남성)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3. 기대효과

- ▶ 법률개선을 통한 가정폭력범죄 감소
- ▶ 법률 대상자의 규모 확대를 통한 가정폭력범죄예방 효과 강화
- ▶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 가정폭력회복센터 운영을 통한 가해자, 피해자 갈등해결 지원
- ▶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가정폭력 예방
- ▶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심리적 외상 회복에 기여
- ▶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 반폭력교육을 통한 가정폭력 및 각종 폭력 사건 예방